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84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염태영 · 백혜련 · 윤종균
조정식 · 이해식 · 박용갑
이연희 · 김영진 · 복기왕
손명수 · 신정훈 · 정일영
김승원 의원(13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영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9. · 10. (생략)</p>	<p>제7조(사업)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u>철도지하화통합개발</u></p> <p>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p>